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9.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9. .

경기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강한곤 의원 등 7명(도하석, 권숙자, 임미연, 서보영, 김기열, 이선주)
- 발의일자: 2023. 9. 1.
- 회부일자: 2023. 9. 1.
- 검토기간: 2023. 9. 1. ~ 9. 5.(5일간)

2.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교육·홍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제6조)
-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 제13조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3. 9. 1. ~ 9. 11.):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구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법인” 을 “지원법인” 으로 변경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의 책무” 를 “구청장의 책무” 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을 수립 · 시행 하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하여 신설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에서 “지원법인” 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과 관련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교육 및 홍보, 포상, 시행규칙에 대하여 신설 규정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 시 경찰관서나 검찰청의 지원 외의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을 통한 범죄피해자들의 종합적인 보호 · 지원 체계를 구축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인””을 ““지원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는”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 “지원법인”-----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u>구의 책무</u>) 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u>구청장의 책무</u>)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
<신 설>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 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

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

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

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